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. 5. 13 선고 2015가단1600 판결 [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4. 29.

판결 선고 2015. 5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답 864m² 중 별지 도면의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(가)부분 26.25m²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주택, 같은 도면의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다)부분 38.4m² 지상에 있는 고철계량저울 및 중고판넬, 같은 도면의 표시 (나)부분에 있는 포크레인을 철거 및 수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양석용

별지